그룹공시규정

소관부서 : IR부
2019. 1. 1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과 국내외 증권거래소, 금융위원회 및 감독기관에서 정한 공시관련 법규(이하 "공시관련법규"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는 공시관련법규 및 지주회사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 자회사 및 종속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라 한다.) 및 New York Stock Exchange(이하 "NYSE"라 한다.) 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문서"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이하 "DC&P"라 한다)"라 함은 지주회사의 모든 공시정보를 정확성·완전성·유효성·적시성의 기준하에 적법하게 공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주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모든 업무활동을 말하며, "DC&P 마스터"라 함은 적법한 공시수행을 위해 각 공시별로 공시항목, 공시단계별 작성자, 항목별 제출시한 등의 사항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말한다.

④ "국내공시"라 함은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 의해 거래소, 금융위원회 등의 국내기관을 제출처로 하는 공시를 말한다.

⑤ "해외공시"라 함은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미국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의해 SEC 및 NYSE 등의 해외기관을 제출처로 하는 공시를 말한다.

⑥ "정기공시"라 함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투자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영성과 등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⑦ "발행공시"라 함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⑧ “수시공시” 라 함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시에 제공하는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⑨ “경영공시” 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지주회사가 정기적으로 또는 적시에 행하는 공시를 말한다.
⑩ “기타공시” 라 함은 정기공시, 발행공시, 수시공시 및 경영공시를 제외한 공시를 말한다.
⑪ “자회사” 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 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제4조(공시정보의 제공) ① 지주회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시정보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시정보가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라 공시되기 전에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의 구분) 공시는 제출기관에 따라 국내공시와 해외공시로 구분되며, 공시의 유형, 공시유형별 주관부서, 제출시한,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공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시담당) ① 공시책임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의거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로서, 업무분담규정상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임원으로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의거 지주회사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하 “거래소 공시담당자” 라 한다)를 2인 이상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지침에 의거 공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④ 공시담당자는 공시담당부서에서 공시업무를 실제로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프로세스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문서(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제출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통제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4.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5. 공시통제프로세스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②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외부전문가,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권
3. 기타 공시통제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공시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공시위원회) ① 지주회사는 공시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시통제

제9조(공시정보의 수집) ① 임직원은 본인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지주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4. 이미 공시한 사항이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장, 공시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은 공시정보의 최초작성자 또는 통지자로서 공시정보 제공의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정기공시 및 발행공시의 경우, 공시정보의 최초작성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지침에서 정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수집된 정보의 중요성 및 공시정보로서의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및 적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정보의 배포) ① 임직원은 본인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공시정보에 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거나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경우 그 내용, 배포시기 등에 대해 공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본인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보도자료 등의 배포 등에 있어 그 내용이 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내용을 공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문서의 준비) 공시담당자는 공시문서의 작성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시공시의 경우 3호 내지 5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시관련법규의 변경여부 확인 및 정정
2. DC&P 마스터 수정사항 확인 및 정정
3. 공시일정 설정
4. 공시관련 교육실시
5. 표준보고서 작성

제12조(공시문서의 작성) ① 공시담당자는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공시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기공시 및 발행공시의 경우, 공시담당자는 취합 작성하는 공시문서의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지침에서 정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작성된 공시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공시문서의 검토확인) ① 정기공시 및 발행공시의 경우, 공시대상정보를 최초로 작성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해당 공시문서를 검토하고 공시지침에서 정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위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책임자의 범위는 「공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시공시의 경우, 공시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수시공시사항의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및 적시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시방법) 공시담당자는 「직무전결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단, 전결권자의 부재로 정해진 공시시한 내 승인을 득할 수 없는 경우는 공시담당부서장의 결재 후 공시를 이행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공시확인 등)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제출기관 등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공시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시문서 및 공시관련 자료는 「총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시통제의 평가

제16조(평가목적) 공시통제의 평가는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게 공시통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7조(평가내용) 공시통제의 평가는 국내공시와 해외공시에 대해 실시하며, 공시통제의 설계 및 운용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제18조(평가시기) ① 정기공시 및 발행공시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공시 이행일 전에 실시한다.
② 수시공시, 기타공시 등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결산기 이후 3개월 내에 실시한다.

제19조(평가절차) ① 공시담당자는 공시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자가평가를 수행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담당자의 자가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공시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20조(평가자료의 관리) 공시통제의 평가와 관련된 내부문서, 검토내용 등은 공시문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Certification)

제21조(인증자) ①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국내외 공시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인증대상에 대해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상의 인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인증해야 할 공시대상은 공시관련법규에 따라 공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인증내용)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인증해야 한다.

1. 인증대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2.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인증대상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제23조(인증 방법)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각 인증공시대상의 작성요령에 따라 서면에 직접 자필 서명한 후 인증공시대상의 일부로서 공시한다.

제5장 기타

제24조(교육)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시책임자는 거래소 공시담당자가 거래소 등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회사 및 종속회사) ①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자회사 및 종속회사는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에 반드시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사항은 공시지침을 따른다.

②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규정 등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위반시 조치사항) 공시책임자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주회사 관련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